

우리나라 축산물 안전성의 취약점과 장기발전 대책(Ⅱ)

본고는 지난 5월 29일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가 수의과학연구소 대강당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박종명(수의과학연구소 안전성과 과장)이 발표한 “우리나라 축산물 안전성의 취약점과 장기발전 대책(Ⅱ)” 내용을 발췌·요약·게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지난호에 이어 계속)

3. 축산식품 안전성 향상 방안

우리나라의 축산물 위생관리는 그동안 미백 위주의 식생활로 그 중요성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인 도축검사는 1919년 도살장 규칙(조선총독부령 184호, 1919년 11월)이 공포되면서 시작되었다.

1961년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제정되면서 식육, 우유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종합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나 1984년 축산물 위생처리법의 개정으로 원료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이 각각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의 행정관할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원료축산물은 농림부에서, 그리고 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이원적 관리체제로 인하여 축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의 구축 및 가격안정 정책의 추진이 어려웠고, 생산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축산식품의 위생문제는 사육단계에서의 질병방역과 도축(계)처리 및 가공·유통과정에서의 위생이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축산물 위생의 전문조직이 갖추어져 있는 농림부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므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 논의는 1994년 2월부터 거론되어 3년동안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1997년 2월 28일 축산물가공식품을 농림부로 일원화 하기로 최종 의결하였

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1997년 11월 제 185회 정기국회에서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축산물 위생관리의 이원적 체제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책임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 보호와 축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며, 축산물 위생관리의 특성상 가축의 위생을 관장하는 전문조직이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야 하는 당위성 외에, 대다수의 선진 외국에서도 농업부(농업식품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참고가 되었다.

금번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특징은 가축의 도살·처리 및 원유의 집유 이외에 축산물(식육, 원유,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의 제조·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그 관장범위가 확대되어 농장에서 소비까지(From farm to table)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농림부에서는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1989년 식육의 잔류물질 허용한계와 잔류분석방법을 제정, 고시하고 전국적인 잔류조사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축산물의 유해물질 잔류방지를 위하여 전국 양축가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잔류방지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다. 1997년에는 유해미생물의 오염방지대책으로 축산물에 대한 미생물검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의 저해요인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먼저 가축의 사육단계에서 아직도 양돈장에서 질병 발생이 커다란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고 이러한 질병 발생의 원인이,

- ① 생산자의 방역 및 위생관리가 소홀하고
- ② 일부 농장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위생적인

사육관리가 어려우며,

- ③ 위생적인 사육관리를 동물약품 사용으로 대체하려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축산물에서 유해물질 잔류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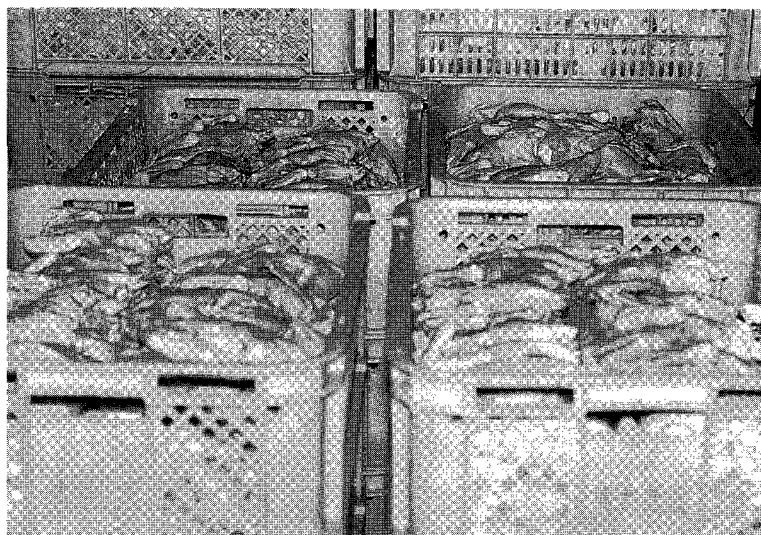
다음 축산물의 처리·가공단계에서는

- ① 대부분의 도축장 및 도계장이 시설이 영세하고 위생관리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며
- ② 경영주를 포함한 종사원들의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한 위생관념과 전문가적인 직업의식이 철저히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처리·가공과정에서 유해미생물의 오염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표4. 우리나라 축산식품의 위생·안전성 저해요인

단계별	현황 및 문제점
가축사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의 방역, 위생관리 및 안전축산물 생산의식 저조 ○농장규모의 영세성으로 위생적인 사육관리가 어려움 ○위생적인 사육관리를 동물약품 사용으로 대체 •유해물질 잔류문제 유발
처리·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축장, 도계장 시설의 영세성 및 위생상태 불량 ○종업원의 직업의식과 위생관념 부족 •유해미생물 오염문제 유발
유통·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ld chain 판매 시스템의 미흡 ○종업원의 위생관념 부족 •유해미생물 오염, 증식문제 유발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열처리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홍보 부족 •식품유래질병(식중독) 피해유발 우려

축산물의 유통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청결과 냉장판매(Cold chain)시스템의 가동이어야 하는



축산의 선진국에서는 축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미생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병원균 감소 : HACCP” 계획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축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물 처리·가공공장을 중심으로 생산에서

데 취급자의 청결과 개인위생, 운반차량, 그리고 냉장고의 가동과 냉장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축산물의 보존성과 함께 유해미생물의 오염과 증식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비단계에서는 축산식품의 위생적인 조리과 취급에 관한 소비자 교육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가축의 사육단계에서부터 처리·가공 그리고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4. 축산식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장기발전대책

축산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는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처리·가공 그리고 유통과 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책방안들은 모두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돼지고기 품질보증 프로그램(Pork Assurance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협회에 가입된 양돈농장의 농장주들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돼지고기의 생산을 위하여 자돈의 구입에서부터 출하시까지 돼지의 사육과정에서 사양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HACCP의 원리를 적용하여 설정하고 이것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수의과학연구소에서는 “돈육 품질인증, 양돈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번역 편집하여 대한양돈협회에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질병과 유해물질이 잔류되지 않은 청정육을 생산하여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축산식품 안전성의 장기 발전 방향은 앞에서 진단한 바와 같이 축산식품의 각 생산단계별 안전성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금번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제정으로 가축의 사

육 단계에서부터 처리·가공,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완성되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원칙에 의한 철저한 실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축산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축산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발전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가축 사육단계

가축의 사육은 축산식품 생산의 제일 첫 단계이다. 가축 사육농장에서 가축의 건강은 축산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좋은 원료가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는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된다.

세계수의식품위생학회는 1993년 제11차 총회에서 “건강한 가축 → 안전한 식품 → 건강한 사람”을 대회 구호로 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강조한 바 있다.

건강한 가축 생산의 요체는 가축질병의 방제이다. 정부는 양축농가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방역사업단까지 설치하고 가축방역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가축의 방역은 가축의 사육자가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생적인 사육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축산물 생산 의지가 굳은 영세한 규모의 사육농가를 연계하여 축종별, 지역별 계열화를 추진하고 고품질 시대에 맞추어 상품 차별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얼굴 있는 제품”으로 브랜드화 및 추적시스템

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자는 노력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받고 더욱 노력하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2) 축산물 처리·가공 단계

우리나라에서 축산물 안전성 확보 저해요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축산물처리 분야이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 현재 108개소의 도축장과 60개소의 도계장이 있으나 시설면에서 도축장은 아직도 15개소(14%)가 간이도축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간이도축장은 조속히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축산물처리장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아니면 도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새로이 건설되고 있는 최신시설을 갖춘 대규모의 종합처리장이 가동될 경우 도축장의 경영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게 될 것이며 과다경쟁으로 인한 불량축산물 생산 우려도 높다.

다음으로 축산물작업장 경영주와 종업원의 철저한 직업의식과 위생관념의 확립이다. 축산식품의 생산자들은 철저한 위생관리로 국민의 생명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긍지높은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가지고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제반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야 한다.

도축장, 도계장, 집유장 그리고 축산물가공공장을 포함한 모든 축산물작업장의 HACCP 도입은 바로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조치로서 축산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이며 다가오는 21세기 자율과 책임의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PL법)이 제정 시행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위생적으로 완전한 고품질의 축산식품 생산체제를 지금부터 확립하자는 것이다.

특히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는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충분한 자율관리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최선의 식품위생 관리기법인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나 여기서 자만하지 말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며 아직까지 HACCP를 도입하지 않은 다른 제조업체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유통·판매 단계

축산식품의 운반과 판매의 위생관리는 축산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식품보다 훨씬 높은 위생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축산식품의 높은 영양성은 유해한 미생물에게도 훌륭한 영양이 되며 변질, 부패가 빠른 특징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가 육안적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미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가 되므로 운반, 저장, 판매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축산식품의 유통·판매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냉장유통체계(Cold chain system)의 확립이다. 우리는 그동안 국내 유수의 유통업체에서도 냉장유통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냉장유통체계의 확립은 근본적으로 사업자의 양식에 호소할 문제이나 기계적 결합에 의한 것이라면 HACCP 기법을 적용하여 개선할 수 있다.

4) 소비자

축산식품의 안전성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축산식품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종류에 따라서는 완전하게 안전하지 않은 것도 있다. 대부분의 원료축산물로 분류되는 식육과 계란 등은 많은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검사가 완전한 전수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혹 인체에 유해한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조리는 필수조건이며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의 방지와 조리된 식품의 취급관리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조리를 담당하는 주부나 식품의 조리 및 판매업자들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집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특별 홍보교육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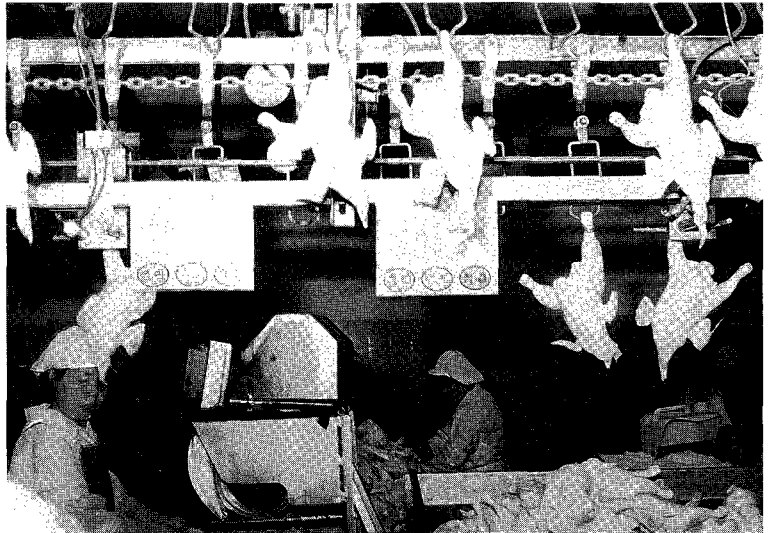
5)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안전한 축산식품의 공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을 위하여 실시되어야 하는 모든 사항들이 성실하게 이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기능의 강화이다. 이러한 기능은 국내 생산이나 수입되는 축산물을 불문하고 내수용으로 공급되는 모든 축산물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적,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

금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정으로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는 우리나라 축산식품 위생과 관련한 정부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가축질병을 방제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게 하는 가축방역조직과도 연계되어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산현장의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는

수의과학연구소와 동물검역소를 통합 개편하여 생산 현장에서의 가축질병 방제와 가축사육과정에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축산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도, 교육, 홍보와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차원의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위생관련 표준검사기관(Reference Laboratory)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규제내용의 감시와 조사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안전한 축산식품의 생산은 물론, 가축을 사양하는 축산농가에서도 위생관리의 소홀과 동물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은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함으로써 불량축산물의 생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실시되어온 축산물(도축, 도계) 검사는 대부분의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육안적 검사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의 방제를 중심으로 하는 병리·해부학적 검사에 치중하여 왔으며 1990년대에 와서 유해물질의 잔류검사와 식육의 미생물검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식품안전성 논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대상이 되는 식품은 주로 축산식품이 차지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완벽한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해한 병원성미생물과 잔류물질에 대한 확실한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그동안의 축산물 검사방법을 개선하여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축산물의 위생관리와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도축과 도계의 현장에서 가축과 가금의 질병과 건강의 이상 유무를 정밀히 검색하고, 그 결과를 가축생산 현장인 축산농가에 제공하여 방역과 위생관리에 활용하게 하며, 축산물 처리·가공장 및 유통업소의 위생관리 지도, 감독과 종업원 위생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축산식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축산물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유해미생물과 잔류물질 그리고 유통제품의 감시적 수거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실험실 검사를 통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축산물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금번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다양한 품목의 축산물가공품이 관리대상으로 추가되어 이제까지 실시하여오던 임상병리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도축·도계검사와 잔류물질

검사, 유해미생물검사 이외에 새로이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업무가 추가되었으며 그 종류는 60여항목이 된다.

축산물의 위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생산현장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익히고 자질을 향상하며 우리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전문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989년도부터 실시하여온 식육 중 유해물질 잔류검사사업은 육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선진국에서와 같이 이미 그 틀을 갖추어 가고 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육류중 미생물검사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육류에 대한 유해미생물의 검사사업이다.

이 사업은 따로 고시된 축산물작업장(도축·도계장)위생관리 요령과 함께 축산물위생에서 새롭게 문제가 되는 육류의 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HACCP", 그리고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총합 위생관리 제조과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패는 전적으로 이 사업을 실제로 담당하여 수행하는 전국의 축산물검사업무 종사자들의 열의와 노력에 달려 있다.

끝으로 부정축산물의 근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절박도살제도의 악용으로 축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한 불신의 골은 말할 수 없이 깊어졌고 일부에서는 동물보호의 차원에서 그리고 생산자 및 국가경제를 고려하여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절박도살(Emergency slaughter)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제도적으로 없애주도록 요청한 사례까지 있었다.

부정축산물이란 이제까지 축산물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사품(밀도살축)을 통칭하는 용어이었으나 현대적 개념으로 본다면 검사를 받았더라도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축산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규격·기준에 맞지 않거나 유해한 미생물이나 잔류물질 등이 잔류 또는 오염되어 있다면(축산물검사가 소홀하게 이루어졌다면) 모두 부정축산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물의 검사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임무이다. 그것은 축산물의 검사 내용이 인수공통전염병의 방제는 물론 식중독 유해세균과 유해물질의 잔류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축산물 검사를 통하여 가축의 질병을 조기에 예찰하고 신속한 방역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축산물검사 결과는 당해 축산물을 식용 적·부 판정하는 것은 물론, 식용 부적 판정시 이를 폐기하여야 하며 축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이 발견될 때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가축 소유주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강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축산물 위생검사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며 가축질병과 축산물 검사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축산물의 유해미생물과 잔류물질 검사는 그 종류가 다종 다양하고 고도의 정밀분석 기법이 적용되므로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축산물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잔류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잔류위반 빈도가 높은 물질을 규제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탐색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며 철저한 규제검사를 실시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상대국의 축산업 실태, 사양관리, 사료(원료사료 포함)의 유해물질 관리, 동물약품 사용, 축산물의 잔류허용한계설정 현황과 전국적인 잔류실태 조사결과 등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수집하여 철저한 규제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종제품의 위생검사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한다는의미는 있으나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충분하지 못하다.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최종제품의 품질관리, 즉 Quality control보다는 가축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품질향상, 즉 Quality improvement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종축의 생산에서부터 사양관리 최종 출하 및 처리·가공, 유통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불량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여 생산성이 높고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종 제품에 대한 규격·기준이나 미생물 또는 잔류물질의 검사는 축산물의 전 생산과정에 대한 안전성의 확인일 뿐이지 검사 그 자체가 최선은 아니기 때문이다.

축산식품의 유해미생물이나 잔류물질 규제와 검사는 세계 각국이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그 규모나 대상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동물약품이 축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현대와 같이 집약적인 축산형태에서는 필요한 일이나 그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유해성도 밝혀진 일이므로 그 사용을 올바르게 하여 그 수익성은 최대로 취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한 유해성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축산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축산물에서 유해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유효성이 높고 안전성이 보장된 새로운 물질의 개발과 이들 신물질의 유효성, 안전성 및 안정성 평가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며, 축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만들어진 위생관리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수익은 최대로 취하면서 동시에 그 유해성을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축산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축산식품 위생 관련 규정과 제도 및 조직을 정비 보완하고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이러한 분야의 시험·연구는 물론 철저한 조사와 검사로 불량한 축산물이 생산되거나 수입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나라 축산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양계**